



고용관계 전 종업원이 확보한 보험 고객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여부 및 사용금지에 대한 항소심 사건

12

Fidelity v. Di Santo, 500 A.2d 431 (1985)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	사건번호	기록 없음
판결 일자	1985.09.20	판결 결과	일부 기각, 일부 파기 환송
원고 (피항소인)	피델리티 펀드 (Fidelity Fund, Inc.)		
피고 (항소인)	조세프 디 산토 (Joseph Di Santo), 쉬프-터훈 (Shiff-Terhune Incorporated)		
참조 법령	기록 없음		
참조 판례	See Van Products Co. v. General Welding & Fabricating Co., 419 Pa. 248, 257, 213 A.2d 769 (1965); Macbeth-Evans Glass Co. v. Schnellbach, 239 Pa. 76, 88 A. 688 (1913); Corroon & Black-Rutters & Roberts, Inc. v. Hosch, 109 Wis.2d 290, 296, 325 N.W.2d 883, 888 (1982); Wexler v. Greenberg, 399 Pa. at 578, 160 A.2d		
영업비밀	보험 고객 정보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고객정보, 고용관계, 호객행위		

02 사건 개요

원고는 보험중개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디 산토는 20년간 대형 상사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룬 보험중개사였다. 그러나 피고 디 산토는 자신의 보험대행점을 팔고 경쟁금지약정에 따라 3년간 보험업계를 떠났다. 그 후 원고는 상사보험부서 확충을 위해 피고 디 산토를 고용하였다.

원고와 피고 디 산토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쟁금지약정 체결 여부에 대한 증거나 청구는 없다.

피고 디 산토는 원고와의 고용관계 종료 후 원고의 경쟁사인 피고 회사와 일했고, 피고 회사는 피고 디 산토의 고객 목록도 함께 구매하고자 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피고 디 산토가 보유한 모든 고객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이다.

원고와의 고용관계 전에 이미 확보한 고객 정보와 독자적으로 확보한 고객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04 판결 요지

피고 디 산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 시작 전에 확보한 고객들과 고용관계 중에 독자적인 노력으로 확보한 고객들에 대한 정보는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한다.

형평법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는 (1) 영업비밀이 존재했다는 사실, (2) 그러한 비밀이 가치가 있었으며 사업에 중요했다는 사실, (3) 사용자가 그러한 비밀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4) 비밀이 종업원에게 공개된 것은 신뢰관계에 기초한 고용관계에 있었을 때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영업비밀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피고가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부정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디 산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 이전에 보유하던 고객 정보와 고용기간 전에 피고 디 산토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원고가 자신의 개발 또는 소유를 근거로 비밀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뢰관계에 바탕을 한 고용관계를 통해 종업원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 디 산토로부터 고용관계 전 확보된 고객정보를 원고가 발견하지도 않았고, 그 목록을 구매하여 접근 권한을 보유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종업원이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정보라면 고용인이 고용관계에 따라 전파된 정보를 종업원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디 산토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객 명단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 디 산토가 원고로부터 취득한 보험 만료 일자 목록은 다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쉽게 획득 가능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피고 디 사노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고객 또는 원고와의 고용관계 이전에 확보한 고객들과 연락한 것이 신뢰관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지원 하에 피고 디 산토가 알게 된 고객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2년간 호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령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적절했다. 이에 지방법원의 결정 중 일부를 유지하고 일부는 파기하여 환송한다.

05 Key Point

고용관계 전에 이미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는 고용인이 이를 구매하거나 취득하는 조건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고용인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미국, 특히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이 관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평법상의 영업비밀 보호 요건을 숙지해야 하며,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이 사건 피고들의 주장을 참고하여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